보건복지부	보도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	2023. 7. 3.(월) 국무회의 시작(8:30)이후	배포	2023. 6. 30.(금)

「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(7.3.)

-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범위 확대 등 규정 -

<요약본>

보건복지부는 7월 3일(월) **국무회의에서 「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**이 **의결**되었다고 밝혔다.

「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**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절차**를 **효율적**으로 **운영**하기 위하여 **재정추계** 실시에 필요한 **세부지침**을 마련할 때, **사회보장위원회**에 두는 **재정전문위원회**의 **심의를 거쳐 확정**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**사회보장위원회**에 **보고**하는 방식으로 **절차**를 **간소화**한다.

둘째,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두는 **재정·통계 전문위원회**를 **재정 전문위원회**와 **통계·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**로 **분리**하여 **사회보장통계** 및 **행정데이터** 관련 **전문가 의견 수렴**을 **강화**한다.

셋째,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건강, 고용, 학교 학적 등 **사회보장 행정데이터***의 **범위**를 **확대**하여 **사회보장 여건**과 **정책효과** 등을 **더욱 심층적으로 분석**하고 **평가**할 수 있게 된다.

*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책 관련 자료 및 정보 (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조제6호)

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"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·행정데이터 등 **과학적 증거**를 기반으로 **사회보장정책 전반**을 **더욱 효과적으로 관리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라고 밝혔다.

<상세본>

보건복지부는 7월 3일(월) **국무회의에서 「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**이 **의결**되었다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은 **사회보장위원회**(위원장: 국무총리) **운영**의 **효율성**을 높이고, 사회보장위원회가 관계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**사회보장 행정데이터***의 **범위**를 **확대**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**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**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
*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책 관련 자료 및 정보 (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조제6호)

「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①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 수립 절차 간소화(제2조)

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**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**를 위해 재정의 세부 범위, 추계 방식 등 전문적 사항을 규정하는 **세부지침**을 마련할 때 종전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나, **사회보장위원회 산하**의 **재정전문위원회**의 **심의를 거쳐 확정**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**사회보장위원회**에 **보고**하는 방식으로 **절차**를 **간소화**한다. 다만 재정추계를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

이를 통하여 **사회보장재정 환경 변화**에 **탄력적으로 대응**하고 **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절차**를 더욱 **효율적으로 운영**할 수 있게 된다.

② 재정·통계 전문위원회의 분리(제12조)

사회보장통계 및 행정데이터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두는 **재정·통계 전문위원회**를 **재정 전문위원회**와 **통계·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**로 **분리**한다.

신설되는 통계·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에서는 **사회보장통계 및 사회보장 행정데이터**에 관련한 **전문가 논의**를 기반으로 통계·데이터를 활용한 **객관적 증거 기반**의 **사회보장정책 분석·평가**를 **강화**해 나갈 계획이다.

③ **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범위 확대**(제20조)

2021년 12월 9일 「사회보장기본법」이 개정된 이후, **2022년부터 사회보장위원회**는 사회보장 여건 및 정책 효과성 파악 등을 위하여 **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**를 **가명정보***로 **수집·연계**하여 사회보장제도 분석 및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.

* 가명정보 : 암호화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

이에,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**사회보장 행정데이터**의 **범위**를 **확대**하여 현재 법령 미비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**건강, 고용, 학교 학적 등**의 **사회보장제도 관련 자료·정보**를 **수집**할 수 있도록 한다.

사회보장제도 분석·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**기초자료의 폭이 넓어져**,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**사회보장 여건**과 **정책효과** 등을 **더욱 심층적으로 분석**하고 **평가***할 수 있게 된다.

* 건강정보, 교육상태, 일자리 등이 추가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정보와 범부처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 분석을 통해 정책 관리·평가과정의 과학적 근거자료 제공

※ (사회보장제도 분석 예시)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수급자 특성,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보장실태,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소득증대 효과 등

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은 "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**사회보장 재정추계**를 더욱 **효율적**으로 **운영**하고 사회보장 관련 통계·데이터에 대한 **전문가 의견 수렴 창구**를 **확대**하는 한편, **데이터에 근거**한 **제도 분석·평가 기반**이 **강화**된다" 라며,

아울러, "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·행정데이터 등 **과학적 증거**를 기반으로 **사회보장정책 전반**을 **더욱 효과적으로 관리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 라고 밝혔다.

<붙임> 1. 사회보장위원회 개요
2.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·활용 개요
<별첨>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담당 부서 <총괄>	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임은정 (044-202-3720)
		담당자	사무관	이석준 (044-202-3711)
<사회보장 행정데이터>	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	책임자	과 장	호미영 (044-202-375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정 (044-202-375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

□ **(법적 근거)**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(사회보장위원회)

□ **(목적)**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, 범부처 차원의 **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·조정**(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)

□ **(구성)** 위원장(국무총리) 포함 **정부위원 15인, 민간위원 15인** 등 총 30인 이내(위원 위촉권자 : 대통령)

위원회	- **구성 : 30인** 이내 (총리,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5, 민간위원 15) - **위원장 : 국무총리** - **부위원장 :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** * 간사 :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,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
실무위원회	- **구성 : 30인** 이내 (복지부장관, 관계차관 등 정부위원 15, 민간위원 15) - **위원장 : 2인** (복지부장관,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) * 간사 :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(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)
전문위원회	- **구성: 6개 전문위** (기획, 제도조정, 평가, 재정, 통계·행정데이터, 제도통합) * 본위원, 실무위원, 관계전문가로 구성(전문위원회별 각 15인 이내)

□ **(기능)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**을 심의·조정

○ 사회보장 기본계획,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우선순위 설정, 중앙행정기관 간 사회보장정책 심의,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·비용 분담

○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,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,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, 사회보장통계 등

□ **(주요연혁)**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시행('13.1월)으로 출범

○ **제1기**('13.5.1.~'15.4.30.), **제2기**('15.6.10.~'17.6.9.), **제3기**('17.12.26.~'19.12.25.), **제4기**('20.3.9.~'22.3.8.), **제5기**('22.11.22~'24.11.21.) 사회보장위원회 운영

붙임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 · 활용 개요

□ **(법적 근거)**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(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), 제43조(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)

□ **(목적) 객관적 근거 기반**의 사회보장정책의 심의·조정 및 연구를 위해 **부처별·제도별 분산**된 **행정데이터 구축 · 활용**(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)

□ **(데이터 연계)** 부처별·제도별 분산되어 있는 행정데이터를 **개인 단위로 연계**하여 국민 빅데이터로서의 **'사회보장 행정데이터' 구축**

* 全 인구의 20%를 **복원 불가능한 대체키로 전환(가명정보)**

* **개인**(가구), **소득·자산**, 사회보험·공공부조·사회서비스 정보 등 **약 33개 기관**으로부터 제공받은 **590여 개 항목** 연계 구축(~'23.)

□ **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·활용 과정**

< 행정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흐름도 >

수집 단계	⇒	정제 단계	⇒	보관 단계	⇒	활용 단계
■ 원천자료 파악 ■ 대체키 정보 파악 ■ 품질영역 사전 검토		■ 분석단위 표준화 ■ 이상치·결측값 처리 ■ 표본 가중치 작업 ■ 분석틀 형성		■ 데이터 현행화 ■ 품질 모니터링 ■ 데이터 누락 및 오류사항 보완·점검		■ 활용결과 축적·공유 ■ 이용자의 품질개선 의견수렴·반영

<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·활용 흐름도 >

표본구축		부처협의		데이터 추출		데이터 결합		자료 정제		데이터분석
전국민 대표 표본 추출	⇨	데이터 보유 소관부처 승인	⇨	표본과 매칭되는 행정데이터 추출	⇨	대체키를 기준으로 행정데이터 결합	⇨	행정데이터 오류 점검 및 자료가공·정제	⇨	사회보장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기획·평가
통계청		소관 부처		정보보유 기관		사회보장 위원회		사회보장 위원회		사회보장 위원회
~3월		~4월		4~8월		4~8월		8~9월		상시